

2007년 바뀐 농정관련 제도

올해부터 농업·농촌 관련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던 제도들 중 더욱 강화된 부분도 있고 새롭게 생긴 것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어야 혹시라도 있을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에 간략하게나마 변화된 제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쌀·과실 브랜드 육성

올해부터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쌀 수입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쌀 브랜드화 육성사업이 실시됩니다. 오는 2010년까지 시군단위 대표브랜드 100개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며, 브랜드 쌀 생산의 유통노력을 평가해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전문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8개 브랜드 경영체에 대해 시설현대화 및 컨설팅, 농가조직화 교육, 홍보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과실 대표브랜드 발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

1월부터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제도 의무화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 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한우·젓소·육우)를 구분하여 병행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개선

3월28일부터 현재 4종류인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3가지로 간소화됩니다. 축산물의 경우는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인증 종류가 신설됩니다.



○ 쌀, 현미 품종명 표시방법 변경

올해부터 쌀, 현미의 다른 품종 혼입률이 20%를 넘을 경우 거짓표시로 인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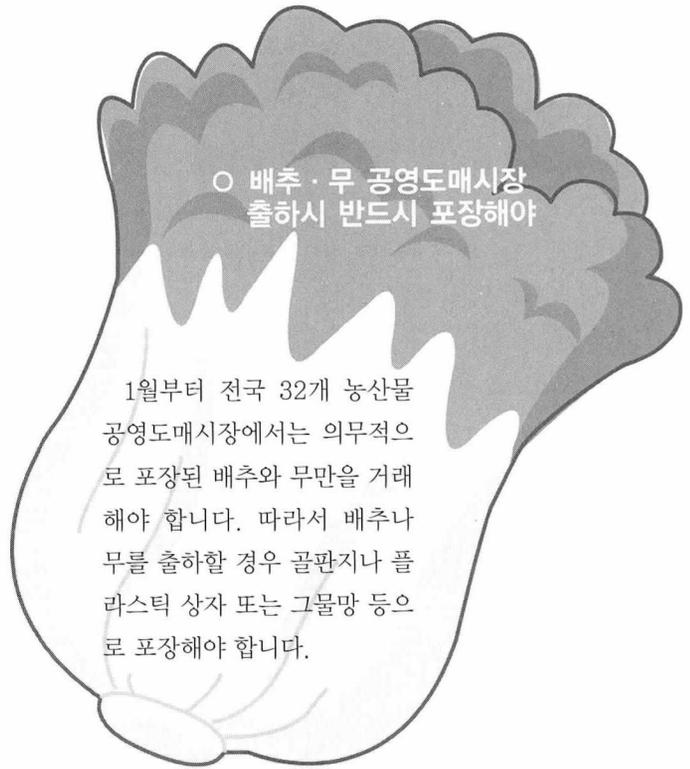


○ 닭·오리고기 포장 의무화

지금까지 닭, 오리고기의 유통을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도축 이후 유통과정 중 미생물 오염방지, 수입산과의 구별 등 위해 포장유통을 의무화했습니다.

○ 햄·소시지 등에 원재료 표시 의무화

올해부터 소시지나 햄 등의 축산물 가공품에 대해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제유류에만 영양소를 표시토록 했으나 2007년부터는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도 영양소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 배추·무 공영도매시장 출하시 반드시 포장해야

1월부터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추나 무를 출하할 경우 골판지나 플라스틱 상자 또는 그물망 등으로 포장해야 합니다.

○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 대상 확대

농사 환경이 열악한 농가를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적용 대상이 늘어납니다. 현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경지 경사도가 14% 이상인 육지나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지역에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경사도 기준이 7%로 완화되고 모든 도서지역에 확대 적용됩니다.

○ 농지 내 축사설치 허용

그간 농지 안에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전용 또는 신고를 거쳐야 했으나 농지법을 개정해 축사부지도 농지로 보아 쉽게 축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 축산 농가 적정사육 밀도 준수 의무화

축산업 등록농가는 올해 1월부터 적정 사육 밀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각종 가축질병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밀집사육'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축방역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익수의사 제도도 시행됩니다.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양육비 지원 대상이 종전 만5세 이하 아동에서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이하 아동까지 확대됩니다. 또 육아비용 지원금액도 종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25%에서 35%로 인상됩니다.

○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취약가구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69세 이하, 농지소유 5ha 미만 농업인이 사고로 영농을 일시 중단한 경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며, 65세 이상 농촌 고령가구 등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취

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이 82개 시군지역에서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 농·수협 조합예탁금 비과세 시한 3년 연장

2,000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한이 올해부터 3년 연장됩니다. 그러나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입은 전면 제한됩니다.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이 18세 이상 영농자녀에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하면 2011년 말까지 증여세를 감면해 주되 감면한도는 5년간 합산해 증여세액 1억원까지로 축소합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농지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 농촌지역 외국인 며느리에게 한국어 교육

올해부터 급증하는 농촌지역 해외 여성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방문 한국어 교육, 소그룹 상담, 가족 캠프, 모국 방문 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 농업경영컨설팅 정액쿠폰제 도입

그간 컨설팅 업체와 농가간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받으면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희망하는 컨설팅업체를 선택해 쿠폰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으면 국가가 컨설팅비용에 대해 지불을 보증하는 바우처 쿠폰제가 적용됩니다. (쿠폰단가 : 개별농가는 800만원 법인 1,000만원 등)

○ 공익 수의사 제도 신설·운영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의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축산물 검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수의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올해부터 매년 150명씩 선발해 2009년부터 450명의 공익수의사를 가축방역 일선현장에 배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익수의사는 지자체 등에 배치돼 3년간 종사하는 경우 병역의무가 대체됩니다.

